

자동차관리법위반 원상복구 공시송달공고

자동차관리법 제10조, 제34조 등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 및 제72조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◎ 제 목 : 자동차관리법위반 원상복구 공시송달 공고

◎ 대 상 자 : 대구달서나09** 등 5건

◎ 공고기간 : 26. 7. 3. - 26. 7. 23.(20일 이상)

◎ 문 의 처 : 고령군청 지역경제실 교통행정담당 (☎054-950-6594)

◎ 유의사항

- 원상복구명령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해당차량을 원상복구하시기 바라며, 지정 기일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(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6년 7월 3일

고령군

